

혼인 기간·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고인 [] 분할연금 수급권자 [] 노령연금 수급권자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
	전화번호(자택)	휴대전화번호
	주소	
	전자우편주소(e-mail)	

배우자였던 사람	성명	주민등록번호	혼인 유지기간
			. . . ~ . . .

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	혼인 기간 중 . . . ~ . . .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. (사유 : ☐ 실종 ☐ 거주불명 ☐ 합의 ☐ 재판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분할 비율 별도결정	유형	[] 당사자 간 합의 [] 재판		
	별도결정일	년 월 일		
	비율	합계	노령연금 수급권자	분할연금 수급권자
		100%		

대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전화번호(자택)	휴대전화번호	신고인과의 관계	
	주소			
	신고인 확인 (인)	기관장 확인 (인)		

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신고인(대리인) 제출서류	1.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) 3.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(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※ 본 신고서는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또는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지급 청구서 제출 후에 영 제4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결정되거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색상이 어두운 란과 "※"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.
- 서식상의 "분할연금 수급권자"에는 분할연금 신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(분할연금 수급 예정자)도 포함합니다.
- 서식상의 "노령연금 수급권자"에는 분할연금 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(노령연금 수급 예정자)도 포함합니다.
- "배우자였던 사람"이란 신고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, 신고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.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.
- "혼인 유지기간"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적으십시오.
- 합의서나 재판서에 분할 비율이 아닌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로 환산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"대리인"란은 수급권자(신청구자)의 해외체류,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.

※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,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